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를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정보화사업”이라 함은”을 ““정보화사업”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보화 시책의 수립”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정보화 기본계획)”을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정보화의”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정

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으로, “5년마다 성동구”를 “5년의 기간을 단위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구의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
2. 정보화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5.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활성화
7.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확산
8. 정보통신기반의 구성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 제목 “(정보화 시행계획)”을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년 성동구”를 “매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원”을 “예산”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본원칙) 구청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2.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3.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를 “구청장은”으로, “수립 및 시행”을 “수립·시행”으로,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정보화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의 담당부서장이 된다.
-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 계획과 연계·조정

2. 주요 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3. 정보격차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5.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의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의 제목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를 “(정보화사업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보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는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원”을 “예산”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관방법”을 “보존방법”으로,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을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수

수료는”을 “수수료 징수 기준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콘텐츠”를 “및 콘텐츠”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 중 “제공시”를 “제공 시”로,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을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로, “웹 표준”을 “관련 사항”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함에 있어”를 “추진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할 때”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정보화교육 기반구축)”을“(정보화교육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정보화교육의 대상)”을“(구민 정보화교육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에서 운영하는 구민 정보화교육의 수강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보화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농업인 및 어업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제28조에 따라 정보화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교육개강일까지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교육개강일 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하여 반환(다만, 교육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개강일까지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교육개강일 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하여 반환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과정별 수강료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을 “제공하여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삭제”를 “삭제한”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자의”를 “홈페이지 이용자들의”로, “필요한 경우”를 “홈페이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류·액수”를 “종류·액수,”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삭제

마일리지 부여기준(제36조 관련)

구 분	대 상	부여 점수	부여 방법
회원가입	홈페이지 회원 신규가입자	500점	최초가입시 1회
로그인	홈페이지 방문자	10점	1일 1회
글·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글·사진·동영상을 게시한 자 (게시물은 직접 구정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	100점 이상 1,000점 이하	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해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정하여 점수를 부여 한다.

[비고] 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 ----- ----- -----.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u>뜻은</u> ----- ----- -----
1. “정보화보사업”이라 함은 전략계획 수립,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또는 유지보수,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또는 대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화사업”이란 ----- ----- ----- ----- ----- ----- -----
2.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3.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삭 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4. “홈페이지”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본청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5. (생략)

<신 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삭 제>

제2장 정보화 시책의 수립

추진체계

제3조(정보화 기본계획) ①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성동구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5조에 따라 성동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 제6조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제3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의 효율적,--5년의 기간을 단위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구의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
2. 정보화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5.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활성화
7.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건

전한 정보문화의 조성·확산

8. 정보통신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정보화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성동구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동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 정보화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학계·기업계·민간

제4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매년-----

② -----

-----예산-----

<삭 제>

단체·구의원·공무원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정보화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

<삭 제>

요한 사항의 변경

3. 그 밖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2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를 참여한 위원과 제12조제2항에 참여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기본원칙) 구청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2.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3.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제10조의2(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정보화 계획과 연계·조정
2. 주요 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3. 정보격차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5.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11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수립·시행-----정보화책임관-----.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의 담당부서장이 된다.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
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
항

<신 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정보화 계획과 연계·조정

2. 주요 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3. 정보격차해소와 정보화 역기
능 방지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
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5.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
육

5의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활용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
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
항

제12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
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
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

제12조(정보화사업의 협의) ① --

-----필요
한 세부사항-----

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사업의 예산
타당성 등 정보화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타당성
을 검토하는 실무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유지관리
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화자료 관리) ① 구청

장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
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
무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생 략)

제18조(정보화자료의 제공 등) ①

-----.

② 정보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는 상호연계·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정
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방
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예산-----
-----.

제17조(정보화자료 관리) ① ----

-----보존방법-----
-----경우에는 「공
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정보화자료의 제공 등) ①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2. 영 제3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농업인 및 어업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화교육 기반구축) ①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자체 상설교육장, 동 주민센터, 교육기관, 학원 등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25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27조(정보화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 학원 등에 정보화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화교육을 수탁한 자에 대하여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보화교육 강사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강사로 위촉하여 수준높은 정보화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자체적으로 양성한 정보문화 인력을 해당 분야의 구민강사나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정보화교육의 대상) 구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육을 받을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제28조(구민 정보화교육의 대상) ① 구에서 운영하는 구민 정보

